# 순천 한양립스 파크포레 입주자모집공고 [정정]

※ 2024년 12월 06일(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중 오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하오니, 이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전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 주택 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 주택공급면적(㎡) | |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 | | | | 일반공급 세대수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
| |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 | | | 기관 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 최초 | 계 | | |
| 2024000710 | 01 | 059.9945A | 59A | 59.9945 | 18.8475 | 78.8420 | 41.6747 | 120.5167 | 54.2888 | 23 | 2 | 2 | 4 | 1 | 2 | 11 | 12 | 2 |
| | 02 | 059.7603B | 59B | 59.7603 | 18.8988 | 78.6591 | 41.5120 | 120.1711 | 54.0769 | 45 | 5 | 5 | 9 | 1 | 5 | 25 | 20 | 5 |
| | 03 | 084.9764A | 84A | 84.9764 | 24.6516 | 109.6280 | 59.0282 | 168.6562 | 76.8949 | 77 | 8 | 8 | 13 | 3 | 7 | 39 | 38 | 8 |
| | 04 | 084.9779B | 84B | 84.9779 | 25.5917 | 110.5696 | 59.0293 | 169.5989 | 76.8962 | 24 | 2 | 2 | 4 | - | 2 | 10 | 14 | 3 |
| | 05 | 084.9861C | 84C | 84.9861 | 25.1495 | 110.1356 | 59.0350 | 169.1706 | 76.9037 | 40 | 3 | 4 | 7 | 1 | 4 | 19 | 21 | 1 |
| | 합 계 | | | | | | | | | **209** | **20** | **21** | **37** | **6** | **20** | **104** | **105** | **19** |

## <변경 후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 주택 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 주택공급면적(㎡) | |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 | | | | 일반공급 세대수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
| |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 | | | 기관 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 최초 | 계 | | |
| 2024000710 | 01 | 059.9945A | 59A | 59.9945 | 18.8475 | 78.8420 | 41.6747 | 120.5167 | 54.2888 | 23 | 2 | 2 | 4 | 1 | 2 | 11 | 12 | 2 |
| | 02 | 059.7603B | 59B | 59.7603 | 18.8988 | 78.6591 | 41.5120 | 120.1711 | 54.0769 | 45 | 5 | 5 | 9 | 1 | 5 | 25 | 20 | **6** |
| | 03 | 084.9764A | 84A | 84.9764 | 24.6516 | 109.6280 | 59.0282 | 168.6562 | 76.8949 | 77 | 8 | 8 | 13 | 3 | 7 | 39 | 38 | 8 |
| | 04 | 084.9779B | 84B | 84.9779 | 25.5917 | 110.5696 | 59.0293 | 169.5989 | 76.8962 | 24 | 2 | 2 | 4 | - | 2 | 10 | 14 | **4** |
| | 05 | 084.9861C | 84C | 84.9861 | 25.1495 | 110.1356 | 59.0350 | 169.1706 | 76.9037 | 40 | 3 | 4 | 7 | 1 | 4 | 19 | 21 | **3** |
| | 합 계 | | | | | | | | | **209** | **20** | **21** | **37** | **6** | **20** | **104** | **105** | **23** |

# 순천 한양립스 파크포레 입주자모집공고

| 청약 Home | 구글플레이스토어 | 애플앱스토어 |
|---|---|---|
| |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4.12.06.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61-751-0001

| 주택유형 | 해당지역 | 기타지역 | 규제지역여부 |
|---|---|---|---|
| 민영주택 | 전라남도 순천시 거주자<br>(2024.09.06. 이전부터 계속 거주) | 순천시 3개월 미만 거주자,<br>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거주자 | 비규제지역 |

| 재당첨제한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택지유형 |
|---|---|---|---|---|
| 없음 | 없음 | 없음 | 미적용 | 민간택지 |

| 구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 특별공급 접수일 |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정 | 2024.12.06.(금) | 2024.12.16.(월) | 2024.12.17.(화) | 2024.12.18.(수) | 2024.12.24.(화) | 2024.12.25.(수)~<br>2024.12.31.(화) | 2025.01.06.(월)~<br>2025.01.08.(수) |

##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계약취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특별공급 | | | | | 일반공급 | |
|---|---|---|---|---|---|---|---|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1순위 | 2순위 |
| 청약통장 자격요건 |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 |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 | 가입 |

| | | | | | | | |
|---|---|---|---|---|---|---|---|
| **세대주 요건** | - | - | - | 필요 | - | - |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 | 적용 | - | 적용 | -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유형 | 당첨자 선정 | 예비입주자 선정 | 동호수 결정 |
|---|---|---|---|
| 특별공급 |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 일반공급 |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br>(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hanyangleeps-sc.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유형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네이버인증서 | KB국민인증서 | 토스인증서 | 신한인증서 | 카카오인증서 |
|---|---|---|---|---|---|---|---|
|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O | | O | | | | |
|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 O | | X | | | |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12.06.(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순천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순천시 **3개월 이상 거주자가(2024.09.06.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구 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1순위 | 일반공급 2순위 | 당첨자발표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 정 | **2024.12.16.(월)** | **2024.12.17.(화)** | **2024.12.18.(수)** | **2024.12.24.(화)** | **2024.12.25.(수)~ 2024.12.31.(화)** | **2025.01.06.(월)~ 2025.01.08.(수)** |
| 방 법 |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br>▪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br>▪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 ▪ (PC·모바일) 청약홈 | ▪ 사업주체 견본주택<br>(주소 : 전라남도 순천시 가곡동 359-3) |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전매제한기간 | **없음** | **없음** |

##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 순천시 건축과-51032호 (2024. 12. 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용당동 288-1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5층 13개동 총 463세대 중 일반분양 209세대**
**(특별공급 104세대(기관추천 20세대, 다자녀가구 21세대, 신혼부부 37세대, 노부모부양 6세대, 생애최초 20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7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 주택 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 주택공급면적(㎡) | |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 | | | | 일반공급 세대수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
| |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 | | | 기관 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 최초 | 계 | | |
| 2024000710 | 01 | 059.9945A | 59A | 59.9945 | 18.8475 | 78.8420 | 41.6747 | 120.5167 | 54.2888 | 23 | 2 | 2 | 4 | 1 | 2 | 11 | 12 | 2 |
| | 02 | 059.7603B | 59B | 59.7603 | 18.8988 | 78.6591 | 41.5120 | 120.1711 | 54.0769 | 45 | 5 | 5 | 9 | 1 | 5 | 25 | 20 | 6 |
| | 03 | 084.9764A | 84A | 84.9764 | 24.6516 | 109.6280 | 59.0282 | 168.6562 | 76.8949 | 77 | 8 | 8 | 13 | 3 | 7 | 39 | 38 | 8 |
| | 04 | 084.9779B | 84B | 84.9779 | 25.5917 | 110.5696 | 59.0293 | 169.5989 | 76.8962 | 24 | 2 | 2 | 4 | - | 2 | 10 | 14 | 4 |
| | 05 | 084.9861C | 84C | 84.9861 | 25.1495 | 110.1356 | 59.0350 | 169.1706 | 76.9037 | 40 | 3 | 4 | 7 | 1 | 4 | 19 | 21 | 3 |
| | 합 계 | | | | | | | | | **209** | **20** | **21** | **37** | **6** | **20** | **104** | **105** | **23** |

- 상기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분양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3.3058]
- 주거 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벽체,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부대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각 세대별 주거 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 공용면적(벽체면적 제외)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 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타입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 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차장 및 공용부위 등 면적은 시설면적 비율로 배분하였습니다.
- 모집공고상의 면적은 제곱미터(㎡)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되며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대로 0.0001㎡ 단위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하였고, 이에 따라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 분양주택 상호간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고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지분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최하층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최하층으로 합니다. (최하층 우선 배정세대는 총 공급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여도 타입별 세부면적과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 구 분(약식표기) | | 59A | 59B | 84A | 84B | 84C | 합 계 |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 1 | 2 | 2 | - | 1 | **6** |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 | 1 | 1 | - | 1 | **3** |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1 | 1 | 1 | - | - | **3** |
| | 장애인 | - | - | 2 | 2 | - | **4** |
| | 중소기업 근로자 | - | 1 | 2 | - | 1 | **4**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2 | 5 | 8 | 2 | 4 | **21**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4 | 9 | 13 | 4 | 7 | **37**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1 | 1 | 3 | - | 1 | **6**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2 | 5 | 7 | 2 | 4 | **20** |
| **합 계** | | **11** | **25** | **39** | **10** | **19** | **104**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 주택형 표시 안내

| 주택형 | 059.9945A | 059.7603B | 084.9764A | 084.9779B | 084.9861C |
|---|---|---|---|---|---|
| 견본주택 등의 약식표기 | 59A | 59B | 84A | 84B | 84C |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 약식표기 | 공급세대수 | 동별 | 층구분 | 해당세대수 | 공급금액 | | | 계약금(10%) | | 중도금(60%) | | | | | | 잔금(30%) |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1차 | 2차 | 1차(10%) | 2차(10%) | 3차(10%) | 4차(10%) | 5차(10%) | 6차(10%) | **입주 지정기간** |
| | | | | | | | | **계약시** | **계약후 30일 이내** | **25.05.06.** | **25.09.06.** | **26.01.06.** | **26.04.06.** | **26.08.06.** | **27.01.06** | |
| 59A | 23 | 101동 1,4호<br>104동 4호<br>105동 4호 | 1층 | 2 | 127,147,569 | 230,852,431 | 358,000,000 | 17,900,000 | 17,900,000 | 35,800,000 | 35,800,000 | 35,800,000 | 35,800,000 | 35,800,000 | 35,800,000 | 107,400,000 |
| | | | 2층 | 2 | 128,568,213 | 233,431,787 | 362,000,000 | 18,100,000 | 18,100,000 | 36,200,000 | 36,200,000 | 36,200,000 | 36,200,000 | 36,200,000 | 36,200,000 | 108,600,000 |
| | | | 3~4층 | 2 | 129,988,856 | 236,011,144 | 366,000,000 | 18,300,000 | 18,300,000 | 36,600,000 | 36,600,000 | 36,600,000 | 36,600,000 | 36,600,000 | 36,600,000 | 109,800,000 |
| | | | 5~9층 | 9 | 131,409,499 | 238,590,501 | 370,000,000 | 18,500,000 | 18,500,000 | 37,000,000 | 37,000,000 | 37,000,000 | 37,000,000 | 37,000,000 | 37,000,000 | 111,000,000 |
| | | | 10~14층 | 5 | 133,895,625 | 243,104,375 | 377,000,000 | 18,850,000 | 18,850,000 | 37,700,000 | 37,700,000 | 37,700,000 | 37,700,000 | 37,700,000 | 37,700,000 | 113,100,000 |
| | | | 최상층 (옥탑) | 3 | 144,550,449 | 262,449,551 | 407,000,000 | 20,350,000 | 20,350,000 | 40,700,000 | 40,700,000 | 40,700,000 | 40,700,000 | 40,700,000 | 40,700,000 | 122,100,000 |
| 59B | 45 | 101동 2,3호<br>104동 2,3호<br>105동 2,3호 | 1층 | 5 | 126,685,491 | 230,314,509 | 357,000,000 | 17,850,000 | 17,850,000 | 35,700,000 | 35,700,000 | 35,700,000 | 35,700,000 | 35,700,000 | 35,700,000 | 107,100,000 |
| | | | 2층 | 6 | 128,459,798 | 233,540,202 | 362,000,000 | 18,100,000 | 18,100,000 | 36,200,000 | 36,200,000 | 36,200,000 | 36,200,000 | 36,200,000 | 36,200,000 | 108,600,000 |
| | | | 3~4층 | 8 | 129,524,382 | 235,475,618 | 365,000,000 | 18,250,000 | 18,250,000 | 36,500,000 | 36,500,000 | 36,500,000 | 36,500,000 | 36,500,000 | 36,500,000 | 109,500,000 |
| | | | 5~9층 | 12 | 130,943,827 | 238,056,173 | 369,000,000 | 18,450,000 | 18,450,000 | 36,900,000 | 36,900,000 | 36,900,000 | 36,900,000 | 36,900,000 | 36,900,000 | 110,700,000 |
| | | | 10~14층 | 14 | 133,427,856 | 242,572,144 | 376,000,000 | 18,800,000 | 18,800,000 | 37,600,000 | 37,600,000 | 37,600,000 | 37,600,000 | 37,600,000 | 37,600,000 | 112,800,000 |

| 약식 표기 | 공급 세대 수 | 동별 | 층 구분 | 해당 세대 수 | 공급금액 | | | 계약금(10%) | | 중도금(60%) | | | | | | 잔금(30%) |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1차 | 2차 | 1차(10%) | 2차(10%) | 3차(10%) | 4차(10%) | 5차(10%) | 6차(10%) | **입주 지정기간** |
| | | | | | | | | **계약시** | **계약후 30일 이내** | **25.05.06.** | **25.09.06.** | **26.01.06.** | **26.04.06.** | **26.08.06.** | **27.01.06** | |
| 84A | 77 | 102동 1,2호 103동 1,2호 106동 1,2호 107동 1호 110동 1,2호 111동 1,2호 113동 1,2호 | 1층 | 5 | 181,845,930 | 316,154,070 | 498,000,000 | 24,900,000 | 24,900,000 | 49,800,000 | 49,800,000 | 49,800,000 | 49,800,000 | 49,800,000 | 49,800,000 | 149,400,000 |
| | | | 2층 | 7 | 184,036,845 | 319,963,155 | 504,000,000 | 25,200,000 | 25,200,000 | 50,400,000 | 50,400,000 | 50,400,000 | 50,400,000 | 50,400,000 | 50,400,000 | 151,200,000 |
| | | | 3~4층 | 17 | 185,862,607 | 323,137,393 | 509,000,000 | 25,450,000 | 25,450,000 | 50,900,000 | 50,900,000 | 50,900,000 | 50,900,000 | 50,900,000 | 50,900,000 | 152,700,000 |
| | | | 5~9층 | 20 | 188,053,522 | 326,946,478 | 515,000,000 | 25,750,000 | 25,750,000 | 51,500,000 | 51,500,000 | 51,500,000 | 51,500,000 | 51,500,000 | 51,500,000 | 154,500,000 |
| | | | 10~14층 | 23 | 191,339,894 | 332,660,106 | 524,000,000 | 26,200,000 | 26,200,000 | 52,400,000 | 52,400,000 | 52,400,000 | 52,400,000 | 52,400,000 | 52,400,000 | 157,200,000 |
| | | | 최상층 (옥탑) | 5 | 206,676,298 | 359,323,702 | 566,000,000 | 28,300,000 | 28,300,000 | 56,600,000 | 56,600,000 | 56,600,000 | 56,600,000 | 56,600,000 | 56,600,000 | 169,800,000 |
| 84B | 24 | 108동 2,3호 109동 2,3호 112동 2,3호 | 2층 | 1 | 191,972,654 | 316,027,346 | 508,000,000 | 25,400,000 | 25,400,000 | 50,800,000 | 50,800,000 | 50,800,000 | 50,800,000 | 50,800,000 | 50,800,000 | 152,400,000 |
| | | | 3~4층 | 5 | 193,862,148 | 319,137,852 | 513,000,000 | 25,650,000 | 25,650,000 | 51,300,000 | 51,300,000 | 51,300,000 | 51,300,000 | 51,300,000 | 51,300,000 | 153,900,000 |
| | | | 5~9층 | 11 | 196,129,542 | 322,870,458 | 519,000,000 | 25,950,000 | 25,950,000 | 51,900,000 | 51,900,000 | 51,900,000 | 51,900,000 | 51,900,000 | 51,900,000 | 155,700,000 |
| | | | 10~14층 | 6 | 199,908,531 | 329,091,469 | 529,000,000 | 26,450,000 | 26,450,000 | 52,900,000 | 52,900,000 | 52,900,000 | 52,900,000 | 52,900,000 | 52,900,000 | 158,700,000 |
| | | | 최상층 (옥탑) | 1 | 215,780,286 | 355,219,714 | 571,000,000 | 28,550,000 | 28,550,000 | 57,100,000 | 57,100,000 | 57,100,000 | 57,100,000 | 57,100,000 | 57,100,000 | 171,300,000 |
| 84C | 40 | 104동 1호 105동 1호 108동 1호 109동 1,4호 112동 1,4호 | 1층 | 2 | 189,308,808 | 310,691,192 | 500,000,000 | 25,000,000 | 25,000,000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150,000,000 |
| | | | 2층 | 2 | 191,580,513 | 314,419,487 | 506,000,000 | 25,300,000 | 25,300,000 | 50,600,000 | 50,600,000 | 50,600,000 | 50,600,000 | 50,600,000 | 50,600,000 | 151,800,000 |
| | | | 3~4층 | 7 | 193,473,601 | 317,526,399 | 511,000,000 | 25,550,000 | 25,550,000 | 51,100,000 | 51,100,000 | 51,100,000 | 51,100,000 | 51,100,000 | 51,100,000 | 153,300,000 |
| | | | 5~9층 | 15 | 195,745,307 | 321,254,693 | 517,000,000 | 25,850,000 | 25,850,000 | 51,700,000 | 51,700,000 | 51,700,000 | 51,700,000 | 51,700,000 | 51,700,000 | 155,100,000 |
| | | | 10~14층 | 12 | 199,531,483 | 327,468,517 | 527,000,000 | 26,350,000 | 26,350,000 | 52,700,000 | 52,700,000 | 52,700,000 | 52,700,000 | 52,700,000 | 52,700,000 | 158,100,000 |
| | | | 최상층 (옥탑) | 2 | 215,433,423 | 353,566,577 | 569,000,000 | 28,450,000 | 28,450,000 | 56,900,000 | 56,900,000 | 56,900,000 | 56,900,000 | 56,900,000 | 56,900,000 | 170,700,000 |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이며, 총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시행자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중도금 융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 중도금 융자알선은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주택 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3.3058]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주택형별, 층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불이익이 생길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비용, 추가 선택품목, PLUS옵션, 가전옵션 등 비용이 미포함 되었으며, 주택 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대출 금융기관으로 대출신청(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중도금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또한,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연체료가 발생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으며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모델하우스에 표현된 외관디자인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협의 및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외부색채, 입면디자인, 경관조명, 조경등 외부 각종 시설물의 디자인 및 형태 마감사양 조명설치 위치 등이 일부 변경될수 있음을 인지 하고, 변경될 수 있는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 및 판매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4 특별공급

| 구분 | 내용 |
|---|---|
|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구분 | | 처리방법 |
|---|---|---|
|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 |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
|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br>※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
| |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모두 **부적격** 처리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0세대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br>■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추천기관 |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02-2225-6492)<br>■ 장애인 : 전라남도청 장애인복지과, 광주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062-613-3295)<br>■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전남 동부보훈지청 보상과(061-720-3252)<br>■ 중소기업 근로자 :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전남동부사무소(061-727-5713) |
| 당첨자 선정방법 |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br>■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br>■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br>■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1세대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순천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br>-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br>■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br>-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br>■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 당첨자 선정방법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br>■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순천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순천시 3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거주자)**<br>■ **②배점** |

| 배점항목 | 총배점 | 배점기준 | | 비고 |
|---|---|---|---|---|
| | | 기준 | 점수 | |
| 계 | 100 | | | |
| 미성년 자녀수(1) | 40 | 4명 이상 | 40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 | | 3명 | 35 | |

| | | | | |
|---|---|---|---|---|
| | | **2명** | **25** | |
| 영유아 자녀수(2) | 15 | 3명 이상 | 15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 | | 2명 | 10 | |
| | | 1명 | 5 |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 | | 한부모 가족 | 5 |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br>-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전라남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br>*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br>***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37세대**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순천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br>-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br>※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br>■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br>■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br>■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 **당첨자 선정방법**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br>■ **①소득구분** |

|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
|---|---|---|
|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br>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br>(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
|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br>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br>(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 3단계 | 우선공급 (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br>(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
| 4단계 | 일반공급 (1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br>(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 5단계 |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br>(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순천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 순위 | 내용 |
|---|---|
|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
| 2순위 |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순천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순천시 3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거주자)**

**비고**

■ **자녀기준**

- 자녀는「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
| 2024. 12. 06.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소득구분 | | 비율 | 소득금액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이하 | ~7,004,509원 | ~8,248,467원 | ~8,775,071원 | ~9,563,282원 | ~10,351,493원 | ~11,139,704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20% 이하 | ~8,405,411원 | ~9,898,160원 | ~10,530,085원 | ~11,475,938원 | ~12,421,792원 | ~13,367,645원 |
|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40% 이하 | 7,004,510원~ 9,806,313원 | 8,248,468원~ 11,547,854원 | 8,775,072원~ 12,285,099원 | 9,563,283원~ 13,388,595원 | 10,351,494원~ 14,492,090원 | 11,139,705원~ 15,595,586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160% 이하 | 8,405,412원~ 11,207,214원 | 9,898,161원~ 13,197,547원 | 10,530,086원~ 14,040,114원 | 11,475,939원~ 15,301,251원 | 12,421,793원~ 16,562,389원 | 13,367,646원~ 17,823,526원 |
| 추첨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9,806,314원~ | 11,547,855원~ | 12,285,100원~ | 13,388,596원~ | 14,492,091원~ | 15,595,587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1,207,215원~ | 13,197,548원~ | 14,040,115원~ | 15,301,252원~ | 16,562,390원~ |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 구분 | 금액 | 내용 |
|---|---|---|
| 부동산<br>(건물+토지) | 3억3,100만원<br>이하 | **건축물**<br>-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br>**토지**<br>-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br>*「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br>*「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br>*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br>*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br>-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6세대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순천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br>-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br>■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br>■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br>-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당첨자<br>선정방법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br>■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순천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순천시 3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거주자)**<br>■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br>**-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 | | |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 | | 1명 | 10 | 5명 | 30 |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3명 | 20 |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20세대**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순천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br>■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br>-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br>**※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br>■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br>-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br>■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br>-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br>-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table>
<tr>
<td></td>
<td>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br>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br>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br>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br>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br>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br>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td>
</tr>
<tr>
<td>당첨자<br>선정방법</td>
<td>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br>
■ ①소득구분
<table>
<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 colspan="2">내용</th></tr>
<tr><td>1단계</td><td>신생아 우선공급<br>(15%)</td><td colspan="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br>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
<tr><td>2단계</td><td>신생아 일반공급<br>(5%)</td><td colspan="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br>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
<tr><td>3단계</td><td>우선공급<br>(35%)</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
<tr><td>4단계</td><td>일반공급<br>(15%)</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
<tr><td rowspan="2">5단계</td><td rowspan="2">추첨공급</td><td>혼인 중이거나<br>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br>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r><td>1인 가구</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br>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br>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순천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순천시 3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거주자)
</td>
</tr>
<tr>
<td>비고</td>
<td>
■ 자녀기준<br>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br>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br>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br>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br>
■ 소득기준<br>
- 소득 확인 시점
</td>
</tr>
</table>

|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
| 2024. 12. 06.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소득구분 | | 비율 | 소득금액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 | 130% 이하 | ~9,105,862원 | ~10,723,007원 | ~11,407,592원 | ~12,432,267원 | ~13,456,941원 | ~14,481,615원 |
|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 | 130% 초과 160% 이하 | 9,105,863원~ 11,207,214원 | 10,723,008원~ 13,197,547원 | 11,407,593원~ 14,040,114원 | 12,432,268원~ 15,301,251원 | 13,456,942원~ 16,562,389원 | 14,481,616원~ 17,823,526원 |
| 추첨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1,207,215원~ | 13,197,548원~ | 14,040,115원~ | 15,301,252원~ | 16,562,390원~ | 17,823,527원~ |
| | 1인 가구 | 160% 이하 | ~11,207,214원 | ~13,197,547원 | ~14,040,114원 | ~15,301,251원 | ~16,562,389원 | ~17,823,526원 |
| |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1,207,215원~ | 13,197,548원~ | 14,040,115원~ | 15,301,252원~ | 16,562,390원~ |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2">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br>(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br>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br>단, 아래 경우는 제외<br>*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br>*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br>*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br>*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br>-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순천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br>■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td></tr>
<tr><td>청약통장<br>자격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br>- 1순위<br>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br>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br>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br>-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br>[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table>
<tr><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
<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
<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
</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td></tr>
</table>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순천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순천시 3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
| 전용면적 60㎡ 이하 | 40% | 60% |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40% | 60% |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①무주택기간** | 32 |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 0명 | 5 | 4명 | 25 |
| | | | 1명 | 10 | 5명 | 30 |
|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 3명 | 20 |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본인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 **배우자** |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 **0** | **1년 이상 ~ 2년 미만** | **2** |
| | | | **1년 미만** | **1** | **2년 이상** | **3**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 점수 |
|---|---|---|
| 1년 미만 | 6개월 미만 | 1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 2년 이상 | 1년 이상 | 3점 |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 구 분 | 내 용 |
|---|---|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br>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br>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br>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br>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br>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br>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
|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br>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br>- 외국인 직계존속 |

| | | |
|---|---|---|
| | |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br>※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br>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br>-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br>-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br>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br>-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br>-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br>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br>-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br>-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br>***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 |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 |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br>-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br>***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
| **비고** |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br>-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br>-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

##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table>
<tr><th colspan="3">필요서류</th></tr>
<tr><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br>-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br>-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td></tr>
<tr><td rowspan="3">제3자 대리신청 시<br>추가서류<br>(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td></tr>
<tr><th>인감증명 방식</th><th>본인서명확인 방식</th></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br>-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br>-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br>-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b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br>-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br>-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b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able>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 |
|---|---|---|
|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br>-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br>-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 **공고단지 청약연습** | |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br>-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br>-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당첨자발표 서비스** | **청약홈** |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br>- **조회기간** : **2024.12.24.(화) ~ 2025.01.02.(목) (10일간)**<br>-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br>-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r>*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br>-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
| | **문자** | - **제공일시** : **2024.12.24(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br>-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br>-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정담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 자격 검증 서류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 구 분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 서류제출장소 | 비고 |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 **2024.12.25(수) ~ 2024.12.31(화)** | 순천 한양립스 파크포레 견본주택<br>(전라남도 순천시 가곡동 359-3) | 서류 제출 시간 및 방법은 별도안내 예정<br>※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서류 반드시 지참 |

■ **공통 유의사항**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 해야하며, 상기 서류제출 일정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단, 정당 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 방문 및 계약체결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예약제'로 진행될 예정이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사오니 홈페이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동호추첨 및 계약일정 등은 추후 홈페이지에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 이전 사전 서류제출기간 내에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당첨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 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 구분 | 서류유형 | | 구비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br>(해당자) | | | |
| 공통서류 | O | | 신분증 | 청약자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br>• 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 | O | | 주민등록표등본 | |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발급 |
| | O | | 주민등록표초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
| | O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O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br>•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 | O | | 인감증명서 또는<br>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 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
| | O | | 인감도장 | |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필수 |
| | | O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 인터넷청약 및 기관추천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제외 |
| | | O | 복무확인서 | |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 | | O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 "전체포함" 발급 |
| 해외근무자<br>(단신부임) | O |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 청약자 |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br>•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br>•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br>• 유학, 연수, 관광, 단순 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는 인정 불가 |
| | | O | 비자 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 청약자 및<br>세대원 |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입국일로부터 7일이내 동일국가 출국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br>• 비자 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함 |
| | | O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배우자 및<br>세대원 |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br>•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기관추천<br>특별공급 | O | | 특별공급 대상자 증명서류 | 청약자 |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기관추천 명단 확인으로 갈음) |

| 구분 | 서류유형 | | 구비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br>(해당자) | | | |
| 다자녀가구<br>특별공급 | | O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청약자 | •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 직계비속 |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로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
| | | O | 한부모가족증명서 | 청약자 |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 | | O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또는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br>(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 | | O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 청약자 또는<br>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br>(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O | 출산 이행 각서 | | • 임신의 경우 |
| | | O | 입양관계증명서 | |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 | | O |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 |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br>-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신혼부부<br>특별공급 | O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청약자 | • 7년 이내의 혼인기간 및 혼인여부 확인, "상세" 발급 |
| | O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청약자 및<br>만19세 이상<br>세대원 전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 | O | | 소득증빙서류 |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br>(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
| | | O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 | | | | 신생아 | • 신생아 우선공급 또는 신생아 일반공급으로 청약한 경우 |
| | | O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 청약자 또는<br>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br>(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O | 출산 이행각서 | | • 임신의 경우 |
| | | O |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 |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O | 부동산 소유현황 | 청약자 및<br>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br>•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노부모<br>부양 | | O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청약자 | • 만 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한 경우 |

| 구분 | 서류유형 | | 구비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br>(해당자) | | | |
| 특별공급 | | O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 | O | |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 | O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 | O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br>•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 | O |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비속 |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 | | O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O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br>•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생애최초<br>특별공급 | O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청약자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여부 확인 |
| | O |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 | O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청약자 및<br>만19세 이상<br>세대원 전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 | O | | 소득 증빙서류 |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br>(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
| | | O | 부동산 소유현황 | 청약자 및<br>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br>•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 | O | 임신진단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 청약자 또는<br>배우자 | • 임신 중인 태아 또는 입양자녀를 가구원수에 포함하기 위한 경우 |
| | | O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 | | O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 | | | | 신생아 | • 신생아 우선공급 또는 신생아 일반공급으로 청약한 겨우 |
| | | O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 청약자 또는<br>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br>(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O | 출산 이행각서 | | • 임신의 경우 |
| | | O | 입양관계증명서 | |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 | | O |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 |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제3자<br>대리인<br>신청 시<br>추가서류 | | O | 위임장 | 청약자 |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 | | O | 인감증명서 | 청약자 |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 증서<br>•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 | | O | 신분증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구분 | 서류유형 | | 구비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 | O | 도장 | 대리인 | • 서명 또는 날인 |
|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 O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해당주택 | • 건축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 | O | | |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 | | O | | |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 | | O | |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기타 | | O | 그 외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 • 청약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 해당자격 | 자산입증 제출서류 | | 발급처 |
|---|---|---|---|
|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 필수 |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br>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br>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①,②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br>③주민센터 |
| | |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br>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br>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br>(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br>(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①,②주민센터<br>③서울시이택스 (etax.seoul.go.kr),<br>위택스(www.wetax.go.kr) |
| | 해당자 |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br>①농지대장 ②축산업 허가증 ③토지이용계획확인서 | ①주민센터 ②지자체 축산과<br>③토지이음(www.eum.go.kr) |
|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 필수 | ①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br>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으로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성년자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해당자격 |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br>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직인 날인)<br>•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① 해당직장<br>② 해당직장/세무서 |
| |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br>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br>③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br>•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①, ②, 해당직장 |
|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br>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 ①, ②, 해당직장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해당직장 |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br>② 사업자등록증명 | 세무서 |
| | 신규사업자 | ①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br>② 사업자등록증명 |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
| | 법인대표자 |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제무재표 ③ 재직증명서<br>④ 사업자 등록증명 ⑤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① ~ ③ 해당직장<br>④ 세무서 ⑤ 등기소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원본, 직인날인)<br>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 ① 세무서, 해당직장<br>② 해당직장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원본) | 주민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 ①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또는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① 해당직장 |
| 전년도 또는 올해 소득이 있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자 | |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상기 내용 참조 |
| 2022.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자 | |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②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① 견본주택 비치<br>② 세무서 |

-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상기 소득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 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서류 외 소득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 서류구분 | 확인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자격<br>입증서류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br>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원본) | ① 해당직장/세무서<br>② 건강보험공단 |
|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명<br>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원본) | |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br>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br>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원본)<br>(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br>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원본) | |
| 소득세납부<br>입증서류 |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br>(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br>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br>사업소득세 납부자)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br>① 소득금액증명원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br>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br>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① 세무서<br>② 해당직장<br>③ 해당직장/세무서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상기 서류 외 자격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청약자 본인의 통산 5년의 납부 실적을 의미합니다.

##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 구분 | 제출유형 | | 구비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br>(해당자) | | | |
| 공통서류 | O | | 신분증 | 청약자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 | O | | 주민등록표등본 | |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발급 |
| | O | | 주민등록표초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
| | O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O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 O | | 인감증명서 또는<br>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 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
| | O | | 인감도장 | |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필수 |

| 구분 | 제출유형 | | 구비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br>(해당자) | | | |
| | O |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 인터넷청약 및 기관추천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제외 |
| | | O | 복무확인서 | |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 | | O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 "전체포함" 발급 |
| 해외근무자<br>(단신부임) | O |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 청약자 |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br>•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br>•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br>• 유학, 연수, 관광, 단순 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는 인정 불가 |
| | | O | 비자 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 청약자 및<br>세대원 |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입국일로부터 7일이내 동일국가 출국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br>• 비자 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함 |
| | | O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배우자 및<br>세대원 |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br>•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추가서류<br>(가점제,<br>예비입주자) | | O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청약자 | • 만 30세 미만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O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br>•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
| | | O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 |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br>*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br>(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 | | O | 당첨사실 확인서 |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br>*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 | | O |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 | O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 | O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br>• 해외체류(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 | | O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직계비속 | •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O | 주민등록표초본 | |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 | | O | 출입국사실증명서 | |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br>• 기록 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구분 | 제출유형 | | 구비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br>(해당자) | | | |
| | | | | | • 단,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br>-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br>-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제3자<br>대리인<br>신청 시<br>추가서류 | | O | 위임장 | 청약자 |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 | | O | 인감증명서 | 청약자 |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br>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 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br>•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 | | O | 신분증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 | O | 도장 | 대리인 | • 서명 또는 날인 |
| 부적격<br>통보를<br>받은자 | | O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해당주택 | • 건축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 | O | | |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 | | O | | |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 | | O | |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기타 | | O | 그 외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 • 청약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 |
|---|---|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 **주택처분 기준일** |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br>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br>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br>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br>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br>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br>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br>*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br>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br>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br>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br>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br>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br>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br>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br>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br>-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br>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br>8.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br>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br>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br>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br>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br>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br>**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br>**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br>**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br>**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구 분 | 일 정 | 계약 장소 |
|---|---|---|
| 당첨자 계약 체결 | 2025.01.06.(월)~2025.01.08.(수) | 견본주택 : 전라남도 순천시 가곡동 359-3 |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항목 | 금융기관 | 납부계좌 | 예금주 |
|---|---|---|---|
| 분양대금납부계좌<br>(계약금, 중도금, 잔금) | 신용협동조합 | 131-022-522736 | 우리자산신탁(주) |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발코니 확장공사비 납부계좌, PLUS 옵션 납부계좌, 가전옵션 선택품목 납부계좌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별도의 이자는 없습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공급대금 중 계약금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또는 전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에 대하여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101동 1403호 홍길동: 1011403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순: 1020201홍길순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 기준 | 확인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본인 계약 시 | ○ |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 본인 |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증 |
| | ○ | | 신분증 |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 ○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용) •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 ○ | | 인감도장 |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외 |
| | ○ | | 부동산 실거래신고서 | | • 접수 장소에 비치 |
| | | ○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 | •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 | ○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일체 | | •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당첨자 (청약신청자) | • 용도 : 주택공급 신청 위임용 또는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발급분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은 대리불가) |
| | ○ | | 위임장 | | • 견본주택 비치 |
| | ○ | | 신분증, 도장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약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 (청약홈 및 LH청약PLUS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계약 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게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 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연대보증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최초 계약체결 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부담)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
  (1)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4)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는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 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 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이며, 총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조합(시행사)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중도금 융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 중도금 융자알선은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 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규제지역지정, 중도금대출 조건 및 대출한도 제한, 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 및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공급대금을 계약한 본인 책임하에 기일 내에 납부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 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가함. 또한, 다주택 계약자, 법인,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기 바랍니다.)
- 본 주택 건설지역인 전라남도 순천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개인의 주택 소유, 대출 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대출 취급기간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관련정책,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 "적격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취급 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 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공급대금을 조달하여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셔야 하며,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계약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조합(시행)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공급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은 비규제지역의 경우 세대당 2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대출취급기관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조합(시행)에서 대신 납부한 중도금 대출 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조합(시행)이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 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조합(시행)과 시공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한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 약정 기간은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이며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조합(시행)이 대신 납부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내에 중도금 대출 상환 및 중도금 대출 대납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에 따라 공급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서 상 계약해제 조항에 따라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자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대출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9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공사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 발코니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단위 : 원, VAT 포함)

| 구분(약식표기)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 계약금 (10%) | 중도금 (10%) | 잔금 (80%) |
|---|---|---|---|---|
| | | 계약 시 | 일정별도 통보 | 입주지정기간 |
| 59A | 16,000,000 | 1,600,000 | 1,600,000 | 12,800,000 |
| 59B | 16,000,000 | 1,600,000 | 1,600,000 | 12,800,000 |
| 84A | 20,000,000 | 2,000,000 | 2,000,000 | 16,000,000 |
| 84B | 18,000,000 | 1,800,000 | 1,800,000 | 14,400,000 |
| 84C | 20,000,000 | 2,000,000 | 2,000,000 | 16,000,000 |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택하여 계약하는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확장 공간 제외 발코니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부위 표기의 '거실', '침실1' 등의 표현은 카탈로그 기준이며, 계약관련 선택사항 및 유의사항을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 확장 계약 가능 기한 이후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 및 전시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공간이 협소하고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어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계되었으며, 사용승인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및 우천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창호, 단열재 및 마감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확장면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해당공간은 결로 방지용 단열재가 설치되나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발코니 확장 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장이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및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본형 세대(비 확장형 세대) 선택 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 구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계좌 | 신용협동조합 | 131-022-271650 | 우리자산신탁(주)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납부계좌, PLUS 옵션 납부계좌, 가전옵션 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습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1403호 홍길동: 1011403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순: 1020201홍길순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반문제는 사업주체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는 각각 발코니확장 공급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서, 중도금부터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 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임]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계약도 인지세 납부대상이며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단, 최초 계약체결시에만 사업체와 분양계약자가 각 1/2씩 부담) 발코니 확장계약시 분양계약자는 인지세 납부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PLUS 옵션 ※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 가능

- 주택형별 별도계약품목의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계약과 별도로 진행할 예정임.
- 주택형별 별도계약품목의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임.
- 최상층 세대는 별도 표기 없는경우 각 동일면적의 타입과 유상옵션금액이 동일함

## ■ 설치내역 및 공급대금

### 1) 현관 style up

(단위 : 원, VAT포함)

| 구분(약식표기) | | 공급금액 | 구성 내용 | 계약금(10%) | 중도금(70%) | 잔금(20%) | 비고 |
|---|---|---|---|---|---|---|---|
| | | | | 계약시 | 일정별도 통보 | 입주지정일 | |
| 현관중문 패턴유리 | 59A,84A,B | 330,000 | 3연동수동, 패턴유리, 비산방지필름 기준 | 33,000 | 231,000 | 66,000 | |
| | 59B,84C | 300,000 | 원슬라이딩수동,패턴유리, 비산방지필름 기준 | 30,000 | 210,000 | 60,000 | |
| 현관 style up | 59A | 900,000 | 가구판넬추가+전면 거울추가 +간접조명+신발살균기 | 90,000 | 630,000 | 180,000 | |
| | 84A | 1,300,000 | | 130,000 | 910,000 | 260,000 | |
| | 84B,C,59B | 1,100,000 | | 110,000 | 770,000 | 220,000 | |

### 2) 거실 style up

(단위 : 원, VAT포함)

| 구분(약식표기) | | 공급금액 | 구성 내용 | 계약금(10%) | 중도금(70%) | 잔금(20%) | 비고 |
|---|---|---|---|---|---|---|---|
| | | | | 계약시 | 일정별도 통보 | 입주지정일 | |
| 바닥마감재 | 59A,B | 2,000,000 | 포쉐린타일(600*1200) | 200,000 | 1,400,000 | 400,000 | 거실,주방,복도 (창고,팬트리제외) |
| | 84A,B,C | 2,300,000 | 포쉐린타일(600*1200) | 230,000 | 1,610,000 | 460,000 | |
| 아트월마감재 | 59A | 440,000 | 거실벽 아트월(600*1200) | 44,000 | 308,000 | 88,000 | 소파반대편 벽면 |
| | 59B | 660,000 | 거실벽+복도일부 아트월(600*1200) | 66,000 | 462,000 | 132,000 | |
| | 84A,C | 660,000 | 거실벽 아트월(600*1200) | 66,000 | 462,000 | 132,000 | |
| | 84B | 1,100,000 | 거실벽+복도일부 아트월(600*1200) | 110,000 | 770,000 | 220,000 | |
| 벽면마감재 | 59B | 1,500,000 | 월장식패널(소파후면+복도쪽) | 150,000 | 1,050,000 | 300,000 | 소파후면+ 복도장식패널 |
| | 59A,84A,B,C | 2,000,000 | 월장식패널(소파후면+복도쪽) | 200,000 | 1,400,000 | 400,000 | |

### 3) 주방 style up

(단위 : 원, VAT포함)

| 구분(약식표기) | | 공급금액 | 구성 내용 | 계약금(10%) | 중도금(70%) | 잔금(20%) | 비고 |
|---|---|---|---|---|---|---|---|
| | | | | 계약시 | 일정별도 통보 | 입주지정일 | |
| 주방가구 | 59A | 1,300,000 | 상부유리플랩장, 수전,독립형 후드 | 130,000 | 910,000 | 260,000 | |
| | 59B | 1,600,000 | | 160,000 | 1,120,000 | 320,000 | |
| | 84A,C | 1,800,000 | | 180,000 | 1,260,000 | 360,000 | |
| | 84B | 2,200,000 | | 220,000 | 1,540,000 | 440,000 | |
| 주방벽+상판 | 59A | 3,100,000 | 주방 상판+벽 엔지니어스톤 | 310,000 | 2,170,000 | 620,000 | |
| | 59B | 3,200,000 | | 320,000 | 2,240,000 | 640,000 | |
| | 84A,C | 3,600,000 | | 360,000 | 2,520,000 | 720,000 | |
| | 84B | 3,400,000 | | 340,000 | 2,380,000 | 680,000 | |
| 팬트리 | 84A | 1,100,000 | 팬트리 도어, 시스템 선반 | 110,000 | 770,000 | 220,000 | 주방 or 복도팬트리 |
| | 84B | 1,200,000 | | 120,000 | 840,000 | 240,000 | |
| | 84C | 1,800,000 | | 180,000 | 1,260,000 | 360,000 | |
| 홈바형 장식장 | 84A,C | 2,700,000 | 홈바형 주방 장식장 | 270,000 | 1,890,000 | 540,000 | |

### 4) 드레스룸 style up

(단위 : 원, VAT포함)

| 구분(약식표기) | | 공급금액 | 구성 내용 | 계약금(10%) | 중도금(70%) | 잔금(20%) | 비고 |
|---|---|---|---|---|---|---|---|
| | | | | 계약시 | 일정별도 통보 | 입주지정일 | |
| 드레스룸 | 59A | 2,600,000 | 고급형시스템선반,화장대,벽판넬,조명 등 | 260,000 | 1,820,000 | 520,000 | |
| | 59B | 1,500,000 | | 150,000 | 1,050,000 | 300,000 | |
| | 84A | 2,800,000 | | 280,000 | 1,960,000 | 560,000 | |
| | 84B | 2,600,000 | | 260,000 | 1,820,000 | 520,000 | |
| | 84C | 3,100,000 | | 310,000 | 2,170,000 | 620,000 | |
| 제습기 | 전평형 | 1,200,000 | 천정형 빌트인 제습기 | 120,000 | 840,000 | 240,000 | |

**5) 욕실 style up**

(단위 : 원, VAT포함)

| 구분(약식표기) | | 공급금액 | 구성 내용 | 계약금(10%) | 중도금(70%) | 잔금(20%) | 비고 |
|---|---|---|---|---|---|---|---|
| | | | | 계약시 | 일정별도 통보 | 입주지정일 | |
| 공용욕실 | 전평형 | 2,900,000 | 비데일체형 양변기, 수납형 세면대 하부장<br>벽,바닥대형타일 (600*1200+600*600)<br>수전 및 액세서리,샤워부스 스타일업<br>천정형 복합환풍기,천정 간접조명 | 290,000 | 2,030,000 | 580,000 | |
| 부부욕실 | 전평형 | 3,200,000 | | 320,000 | 2,240,000 | 640,000 | |

**6) 조명, 스위치 및 천정 style up**

(단위 : 원, VAT포함)

| 구분(약식표기) | | 공급금액 | 구성 내용 | 계약금(10%) | 중도금(70%) | 잔금(20%) | 비고 |
|---|---|---|---|---|---|---|---|
| | | | | 계약시 | 일정별도 통보 | 입주지정일 | |
| 거실,주방<br>침실,욕실 외 | 59A | 4,200,000 | 거실,주방,침실,욕실 조명 및 스위치 고급화<br><br>거실, 주방 천정 스타일업<br>(거실,주방우물천정+간접등+직부등+실링팬) | 420,000 | 2,940,000 | 840,000 | |
| | 59B | 4,100,000 | | 410,000 | 2,870,000 | 820,000 | |
| | 84A,C | 4,400,000 | | 440,000 | 3,080,000 | 880,000 | |
| | 84B | 4,300,000 | | 430,000 | 3,010,000 | 860,000 | |

※ 각 타입에 따라 설치 품목 및 위치가 일부 상이 하오니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설치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후 선택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Style Up 옵션 내역 중 일부 부분만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공급금액은 해당 옵션 선택 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PLUS 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구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PLUS 옵션 납부계좌 | 추후 별도 통보 | | |

- PLUS 옵션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납부계좌,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
  (예시 : 201동 1403호 홍길동: 2011403홍길동 / 202동 201호 홍길순: 2020201홍길순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반문제는 사업주체에서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시까지에 대한 별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가전옵션 선택품목

■ **빌트인 가전제품**

(단위 : 원, VAT포함)

| 구분(약식표기) | 공급금액 | 구성 내용 | 계약금(10%) | 중도금(70%) | 잔금(20%) | 비고 |
|---|---|---|---|---|---|---|
| | | | 계약시 | 일정별도 통보 | 입주지정일 | |
| 전평형 | 6,000,000 | 냉장고+김치냉장고 | 600,000 | 4,200,000 | 1,200,000 | LG전자 |
| 전평형 | 500,000 | 3구 인덕션 | 50,000 | 350,000 | 100,000 | LG전자 |
| 전평형 | 1,500,000 | 식기세척기 | 150,000 | 1,050,000 | 300,000 | LG전자 |

- 3구 인덕션 옵션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하는 3구 하이브리드쿡탑은 설치 및 제공되지 않으며 상기공급금액은 3구 하이브리드쿡탑 금액을 차감 한 금액임.
- 식기세척기 옵션 선택 시 가구패널 마감은 제조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콘센트가 추가로 설치되고, 해당 금액은 판매가격에 포함함.
- 빌트인 냉장고는 상기 표기된 바와 같이 주택형별로 맞춤 구성된 세트로만 판매하며, 상품의 조합 및 설치위치, 모델, 디자인, 색상은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고 변경은 불가함.
- 빌트인 냉장고는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해당세트 구성 제품별 설치위치 포함) 좌우가 변경될 수 있음.
- 빌트인 가전은 설치시점에 이르러 생산단종(성능개선, 디자인변경 등의 사유)발생 시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이와 같은 상황 발생 시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음)
- 3구 인덕션 유상옵션 선택과 무관하게 주방가스배관 및 차단기는 기존위치와 동일하게 설치됨.

■ **냉장고 수납장** (빌트인 냉장고+김치냉장고 선택시 필수 선택)

(단위 : 원, VAT포함)

| 구분(약식표기) | | 공급금액 | 구성 내용 | 계약금(10%) | 중도금(70%) | 잔금(20%) | 비고 |
|---|---|---|---|---|---|---|---|
| | | | | 계약시 | 일정별도 통보 | 입주지정일 | |
| 냉장고수납장 | 59A,B | 1,000,000 | 냉장고수납장 | 100,000 | 700,000 | 200,000 | |
| | 84A,C | 1,500,000 | 냉장고수납장+텐덤박스 | 150,000 | 1,050,000 | 300,000 | |
| | 84B | 1,400,000 | 냉장고수납장+텐덤박스 | 140,000 | 980,000 | 280,000 | |

- 냉장고수납장은 빌트인 냉장고, 김치냉장고 선택시 필수 선택사항임.
- 빌트인 냉장고, 김치냉장고 미선택시는 기본형 냉장고장으로 설치됨.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 VAT포함)

| 구분(약식표기) | 설치 대수 | 공급금액 | 구성 내용 | 계약금(10%) | 1차 중도금 (30%) | 2차 중도금 (40%) | 잔금(20%) | 비고 |
|---|---|---|---|---|---|---|---|---|
| | | | | 계약시 | 일정별도 통보 | | 입주지정일 | |
| 59A,B | 2대 | 3,700,000 | 거실+침실1 | 370,000 | 1,110,000 | 1,480,000 | 740,000 | |
| | 3대 | 5,200,000 | 거실+침실1+침실2 | 520,000 | 1,560,000 | 2,080,000 | 1,040,000 | |
| | 4대 | 6,800,000 | 거실+침실1+침실2+침실3 | 680,000 | 2,040,000 | 2,720,000 | 1,360,000 | |
| 84A,B,C | 3대 | 5,200,000 | 거실+침실1+침실2 | 520,000 | 1,560,000 | 2,080,000 | 1,040,000 | |
| | 4대 | 6,800,000 | 거실+침실1+침실2+침실3 | 680,000 | 2,040,000 | 2,720,000 | 1,360,000 | |
| | 5대 | 8,200,000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 820,000 | 2,460,000 | 3,280,000 | 1,640,000 |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실외기실 배관은 노출배관으로 시공 예정임.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위치는 상기 선택사항별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
- 상부세대 비확장 선택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천장 단열재 두께변경 및 시스템에어컨이 돌출시공 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리모콘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됨.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세대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벽체 냉매배관(거실, 침실1)이 설치되지 않으며, 해당되는 비용은 판매금액에서 차감 정산함.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실내기 및 실외기 모델은 주택형별, 가전사별, 실별로 상이하고 표기량이 많아 판매시 별도로 세부 안내 예정임.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실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의 출시, 시장 상황의 변화 등 당초 계약모델을 공급함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동질 이상의 타 모델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환기 디퓨져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배관 위치등이 이동(변경) 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등기구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실내기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용량에 맞는 제품으로 실외기 공간에 설치되며, 운전소음이 발생함에 따라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시운전을 위해 보양지가 제거되며, 입주 시 보양지가 제거된 상태로 공급함.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으며, 필요시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용 실외기를 별도로 설치해야함.

## 가전옵션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 계좌 구분 | 구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가전옵션 선택품목** | **계약금, 중도금, 잔금** | 추후 별도 통보 | | |

- 가전옵션 선택품목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납부계좌,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1403호 홍길동: 1011403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순: 1020201홍길순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반문제는 사업주체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임
- 추가 선택품목 금액은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 및 빌트인 가구 매립시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빌트인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시공 상의 문제로 당사가 별도로 통지하는 계약체결일정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함.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플러스 옵션 유형, 제품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관계사의 도산 및 현장시공 상황 등에 따라 입주 시 동질, 동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공통

- 「주택법」제54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기구,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 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신청 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자재 품목과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주방가구 및 신발장 설치 위치는 사업승인도면에 준함)

| 품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공급 품목 |
|---|---|---|
| 문 | 목재・플라스틱문틀(문짝, 문틀, 상부덧판, 문선 등 포함), 창호철물 일체 (도어록, 도어레버등) 가구 도어(드레스룸, 팬트리, 다용도실 등), 현관 디지털도어록 | 세대 현관방화문(문짝 포함), 실외기실 출입문(문짝 포함), PL창호(유리 포함), 실외기실 루버, 대피공간 출입문(문짝, 자동닫힘 장치 포함) |
| 바닥 | 강마루, 현관/발코니/다용도실 바닥타일(시멘트몰탈 포함), 걸레받이, 현관디딤판, 현관마루귀틀, 발코니/다용도실 재료분리대 | 바닥방수, 바닥난방 및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
| 벽 | 벽지(초배 포함), 벽체 마감(타일), 발코니 수전, 신발장, 드레스룸 도어, 거실 아트월타일 | 시멘트벽돌 벽체(시멘트몰탈 또는 석고보드 포함), 단열재, 석고보드마감, 발코니벽체 CRC보드, GAS배관 |
| 천장 | 벽지(초배 포함), 등박스(우물천장 포함), 반자돌림(몰딩포함), 천정인테리어 마감재 | 천정틀 및 석고보드, 커튼박스, 발코니 천장 도장, 소방관련시설(감지기), 설비배관 |
| 욕실 | 천정재(천정틀 포함), 욕실벽 및 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샤워부스, 욕실장, 위생기구류(양변기, 세면기, 욕조, 기타 악세서리 류 등), 수전류, 비데(부부욕실), 욕실환기휀, 젠다이 상부 석재 | 시멘트벽돌, 벽체 및 바닥방수,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
| 주방 | 주방가구(주방상판, 냉장고장 등, 싱크볼 및 악세서리 포함), 주방기구류(가스쿡탑, 레인지후드, 음식물탈수기등), 수전류, 주방벽 타일 (타일붙임 몰탈 포함) | 소방관련시설,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
|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등 조명기구 일체 |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 |
| 일반가구 | 신발장, 안방화장대, 드레스룸 시스템가구(스페이스월 포함), 팬트리, 시스템선반 | - |
| 기타 | 발코니 수전류, 전열교환기 및 환기덕트 | 설비배관, 거실월패드, 외부 발코니난간대, 에어컨 냉매배관(해당실), |

※ 상기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품목은 기본형(비확장형) 기준이며, 상기 품목들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금액[천원미만 절사함] (단위 : 원)

| 주택형(약식표기) | 59A | 59B | 84A | 84B | 84C |
|---|---|---|---|---|---|
| 기본선택<br>(마이너스 옵션금액) | 25,769,000 | 25,709,000 | 34,253,000 | 34,547,000 | 34,411,000 |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합니다.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과 발코니확장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 선택세대는 발코니확장옵션 및 추가 선택품목 옵션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 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시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지침」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법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시공 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 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확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 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공사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건축법」제52조,「건축법 시행령」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발코니 오수드레인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물사용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에도 향후 계약자가 별도의 발코니 확장공사를 할 경우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마감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가변식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공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 바탕처리가 없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 10 단지 여건 등

| 구분 | | 내용 |
|---|---|---|
| 공통사항 | 일반사항 | •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br>•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 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br>•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의 변경 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br>•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br>•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되며, 하자 여부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에 따릅니다.<br>• 일부 세대는 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선행 시공 세대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에 사전 안내되지 않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br>• 상기 공급금액은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된 가격입니다.<br>•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가전제품, 부동산중개 등)는 본 사업과 무관하므로 특히 계약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r>•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계획서를 안내하며 입주 개시 전 그 결과를 공고예정입니다. |
| | 인・허가 | • 각종 홍보물은 2024년 10월 사업계획변경승인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br>• 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조성 계획은 각 시행 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 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최초 사업계획승인일이 2022년 07월로 소방내진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br>• 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 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고, 변경사항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통보합니다.<br>•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행정명령,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행정명령 등의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입주시기, 소유권 이전절차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 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 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br>•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등에 대한 사항은 주택법에 의거 결정됩니다. |

| | | |
|---|---|---|
| | | •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 23조에 따라 매도청구 대상대지(순천시 용당동 288-2번지 16㎡(지목:도로))의 경우 결정문에 의거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으며, 사용검사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 | 사업지 및 도로 단지 주변 현황 | • 향후 소음영향평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방음벽은 단지 부지 내에 설치되므로 방음벽 관리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비용은 관리비에 부과되며 계약자는 해당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br>• 향후 소음영향평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되는 경우 방음벽이 설치되는 위치와 높이에 따라 일부 세대에서는 방음벽으로 인한 빛의 반사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br>• 사업 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br>•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br>• 단지 경계에는 투시형 펜스(방음벽 포함) 또는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 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부지 내 옹벽 지지를 위해 지하 매설물이 설치될 경우 영구 점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며 계약 시 해당 내용을 인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br>• 기반시설의 위치, 도로, 하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분묘 및 송전탑 등 혐오 시설 유무, 주변 개발 현황 등 단지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및 모형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 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br>•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향후 공사 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br>•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기반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주택건설사업과 무관하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br>•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및 기반시설 등은 해당 관청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양도 예정이며, 조성 계획 및 설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전주의 위치, 이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수 없습니다. |
| | 학교 | • 본 아파트 내에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br>• 학생 배정 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전라남도교육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 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br>• 초등학교는「순천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학생배치 및 학교시설 확보 계획 변경(안)」에 따라 순천용당초등학교로 배정되었습니다.<br>• 교육시설 등은 향후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및 통학구역 및 학교군 내 공동주택 개발계획의 변경(공급면적, 세대수, 입주시기, 분양방법 등) 및 새로운 개발계획 승인·시행 등 학생 배치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학생배치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 시기, 학생수, 교육부의 급당 학생수 정책,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 및 개발계획 변경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임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청 등 관계 기관의 계획에 따른 것으로 관계 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br>• 통학로 관련하여 사업계획 승인시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과와 협의한 사항으로, 추가적인 통학로 개설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

| | | | |
|---|---|---|---|
| 단지 | 동별 현황 | 구분 | 공 지 사 항 |
| | | 101동 | • 향후 소음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방음벽 설치로 인해 빛 산란 등과 같은 눈부심으로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br>• 주출입구에 인접하여 자동차 소음과 일부저층세대에서는 문주설치에 따른 시야 간섭, 빛 산란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br>• 단지 후면에 위치한 교회로 인하여 일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br>• 후면의 교회 인접부에 상가용 발전기실용 급배기 D.A가 설치되며 발전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br>• 전면에 어린이놀이터가 위치하여 이용에 따른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102동 | • 단지 후면에 위치한 교회로 인하여 일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br>• 주출입구에 인접하여 자동차 소음과 일부 저층세대에서는 방음벽 설치에 따른 빛 산란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 | 103동 | • 인동간 거리를 법적기준 이상으로 이격하였지만 남측 옥상의 스카이브릿지 주민공동시설로 인해 생활의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br>• 후면부가 주출입구에 인접하여 자동차 소음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br>• 전면부에 지하주차장 경사로가 있어 자동차 소음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 | 104동 | • 향후 소음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방음벽 설치로 인해 빛 산란 등과 같은 눈부심으로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br>• 인동간 거리를 법적기준 이상으로 이격하였지만 남측 옥상에 위치한 주민공동시설로 인해 생활의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br>• 후면에 발전기실용 급배기 D.A가 설치되며 발전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105동 | • 향후 소음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방음벽 설치로 인해 빛 산란 등과 같은 눈부심으로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br>• 옥상 스카이브릿지 주민공동시설용 엘리베이터를 아파트와 분리하였지만 주출입구 전면 보행통로를 주민들이 이용함에 따라 생활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br>• 최상층 주민공동시설(스카이브릿지, 옥상정원)이 위치하고 있어 최상층 및 일부세대에 소음 및 진동, 일조량 감소 등 생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br>• 1층 필로티부분에 경로당의 출입구를 아파트 출입구와 분리 설치하였지만 동선상의 생활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br>• 전면부에 학교 통학로, 학교주차장과 등산로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발생 등 생활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 | 106동 | • 옥상 스카이브릿지 주민공동시설용 엘리베이터를 아파트와 분리하였지만, 주출입구 전면 보행통로를 주민들이 이용함에 따라 생활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br>• 최상층 주민공동시설(스카이브릿지, 옥상정원)이 위치하고 있어 최상층 및 일부세대에 소음 및 진동, 일조량 감소 등 생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br>• 전면부에 학교주차장과 등산로가 위치하고 있어 매연 및 소음발생 등 생활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br>• 지하주민공동시설용 썬큰계단이 위치하고 있어 생활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 | 107동 | • 전면부에 학교 주차장과 등산로가 위치하고 있어 매연 및 소음발생등 생활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br>• 후면에 어린이놀이터가 위치하여 이용에 따른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108동 | • 전면부에 옹벽이 위치하고 있어 옹벽면에 인접된 저층세대는 조망권, 일조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br>• 전면부에 위치한 소방용 비상도로가 평상시는 주민용 산책로로 이용될 수 있어 저층세대에 생활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br>• 인근에 전기차충전소가 있어 화재시 연기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br>• 전면부에 학교주차장과 등산로가 위치하고 있어 매연 및 소음발생등 생활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 |
|---|---|
| 109동 | • 전면부에 옹벽이 위치하고 있어 옹벽면에 인접된 저층세대는 조망권, 일조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br>• 전면부에 위치한 소방용 비상도로가 평상시는 주민용 산책로로 이용될 수 있어 저층세대에 생활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br>• 전면부에 전기차충전소가 있어 화재시 연기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110동 | • 전면에 어린이놀이터가 위치하여 이용에 따른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br>• 1층 전체가 필로티로 오픈되어 중앙광장과 연결되는 보행통로로 계획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민 통행에 따른 생활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br>• 인근에 전기차충전소가 있어 화재시 연기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111동 | • 전면에 중앙광장 및 차량출입구가 위치하여 이용에 따른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br>• 1층 전체가 필로티로 오픈되어 중앙광장과 연결되는 보행통로와 자동차 통행로가 계획 되었습니다. 따라서 통행에 따른 생활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112동 | • 전면부에 옹벽이 위치하고 있어 옹벽면에 인접된 저층세대는 조망권, 일조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br>• 전면부에 위치한 소방용 비상도로가 평상시는 주민용 산책로로 이용될 수 있어 저층세대에 생활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br>• 인근에 전기차충전소가 있어 화재시 연기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br>• 전면에 야외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며, 이용에 따른 소음,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해서는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되고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 113동 | • 전면부에 지하주차장 경사로가 있어 자동차 소음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br>• 전면부에 전기차충전소가 있어 화재시 연기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br>• 인근에 교회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등 생활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 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 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 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외에 레벨차가 있는 구간에는 조경석 쌓기, 비탈면,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의 중·저층세대는 주행 차량 또는 보행자로 인해 생활권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 형태와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계단실 내 창호는 일부는 고정창, 일부는 프로젝트창으로 적용되며, 프로젝트창의 적용 위치는 층별, 동별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홀 내 창호 크기는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폭우로 인한 기상악화로 아파트 인근 산에서 우수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주변 녹지, 학교(팔마고등학교), 도로(보도 포함)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분진, 조망권 및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 단지계획<br>(설계,디자인, 마감) |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br>•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
|---|---|---|
| | | • 단지 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 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단지 내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 각종 인입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 및 진동·악취 발생·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동별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시 위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향후 해당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br>• 주거 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br>•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경시설(수공간 등),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 램프, 단지 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불빛, 분진 등에 의한 생활권과 사생활 침해 등 각종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br>• 구간별 사업 부지 단차 구간에 조경석 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조건, 미관,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동 상부에 공용부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규모(크기, 높이, 개소)는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 배치 및 일조량에 따라 일부 동 혹은 전체 동에 분산 설치되며, 구조물에 의해 설치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각 세대별 동 조합에 따른 동 평면상의 굴곡에 따라 인접세대에 의해 일조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전에 견본주택 모형 및 도면을 통하여 확인해야 함<br>•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 배관, 연도, 고가수조,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소음 및 진동·사생활 침해,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br>•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 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 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치장석재/벽돌 및 필로티 마감은 비구조 요소 내진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일부 동은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br>•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 인원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br>•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수량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br>• 옥외 계단 및 옥외 엘리베이터는 실시공 과정에서 디자인, 색상, 설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 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br>•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단지 내 조경 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 될 수 있으며,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br>• 단지 내 설치된 수경시설은 인계 후 안전, 보건, 수질관리는 관리주체의 의무이며 관리소홀로 인한 오염수, 미생물이나 해충 발생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있습니다.<br>• 단지 외부 시설 내 인터넷 필요 시 통신 관련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br>• 단지 남측 봉화산 산책로는 시민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용시설물로 입주자가 차단할 수 없으며, 관리 책임은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있습니다.<br>•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시설물의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도시가스 배관의 세대 내 원활한 인입 및 가스계량기 설치를 위해 발코니 및 다용도실의 천장고 및 마감면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일부 동 전면 또는 후면에 외부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인근 세대는 소음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단지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br>• 단지 배치상 레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접 대지와의 레벨차에 따른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 | |
|---|---|---|
| | | • 공기안전매트 설치구간에는 입주자 피난안전을 위해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br>• 주동 및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 상부에 옥상 조경이 설치되며, 조경 계획은 옥상의 환경을 고려해 실시설계 및 시공 시 확정됩니다.<br>• 외창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외벽 및 발코니, 지붕 등에 장식용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br>• 단지배치는 비상차도에 차량의 이동은 제한되나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차 또는 응급차가 진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층세대 또는 도로 인접세대에 소음, 빛 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br>• 단지 외부 인도는 조경수, 자전거통행로, 전기, 수도, 가스인입을 위한 별도의 시설물 등이 설치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br>• 미술 장식품 설치는 전라남도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형태/크기 등은 추후 결정되며 이에 따라 외부 공간계획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br>• 일부 세대의 경우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수 있으며, 현관 전면에 계단실 또는 채광창의 위치는 동·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br>•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바닥포장, 지상, 지하 동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상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br>•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 | 외관 계획 |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분리수거장 등), 조경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옹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발주처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고유한 업무 영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br>• 단지 문주는 진입 공간 배치 현황 및 현장 여건에 맞춰 형태, 크기, 배치가 결정되며, 문주 설치로 인해 주 진입부에 위치한 일부 저층 세대에서는 세대 조망에 간섭 및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문주에 설치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br>• 외부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은 단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사 및 당사의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br>• 아파트에 적용된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특화(입면, 창호, 난간, 로고 등의 형태, 색채) 공용부분의 계획(조경, 주동출입구, 지하출입구, 문주 등)은 마감재 등 디자인 일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 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br>• 아파트 옥상 및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 및 로고(BI)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조명으로 인하여 인접 세대는 빛반사로 인한 눈부심,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br>• 아파트 일부 동 측벽에는 금속 마감 및 조명이 설치되며 그에 따른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br>• 경관조명은 빛공해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 및 작동에 제약이 있거나 위치 등이 조정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는 계약 시 위 빛 공해등의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향후 해당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공용시설 |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에어컨 실외기, 배기팬, 설비 시설, 쓰레기 수거시설, 옥외 엘리베이터 등)로 인해 일조권·조망권·소음 및 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br>• 단지 내 계획된 주민공동시설(어린이놀이터, 야외 운동시설, 커뮤니티센터, 어린이집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br>•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br>• 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 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이동 가구, 비품,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r>• 주민공동시설 운영관리시스템(FMCS)은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br>• 주민공동시설의 경우 입주시 사업주체가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 예정이나, 위탁업체 선정이 지연될수 있습니다. |

| | | |
|---|---|---|
| | |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br>•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의 성능 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실 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 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본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 야적장 및 분리수거장, 재활용 보관소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br>•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br>• 스쿨버스 드랍존 내 이동식 보호자 대기소의 집기류는 별도 제공되지 않습니다<br>• 준공 후 조경 유지 관리 의무는 관리주체 및 입주자에게 있으며, 유지 관리 소홀로 인한 조경수 고사 및 조경 하자는 시공사에 책임이 없습니다.<br>•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일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수목고사와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br>• 주민공동시설 난방 급탕을 위한 보일러 연도가 외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세대는 조망권, 소음, 진동, 열기,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br>• 근린생활시설 및 부속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해 주변 인접 동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 및 크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br>• 각 동별 옥상층은 공유면적에 포함되므로 옥상층을 사용하는 세대는 칸막이등의 추가 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 등을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 발생을 포함한 행정조치와 원상복구가 이행되어야 합니다<br>• 각 동별 계단실 등 공용부 및 단위세대 내 대피공간에 물건 등의 적치 행위는「소방법」에 저촉됨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피난 안전등의 사유로 불가함을 안내하오니 위 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r>•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저층 세대에 대한 전기료 및 소규모 수선비용 등 사용에 관한 비용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이나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에 따라 부과되며, 이는 관리주체 및 입주자관리규약에 따른 것으로 사업주체,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br>• 본 아파트 주출입구 옆 근린생활시설 E/V의 관리, 유지 및 보수 관리에 관한 비용은 입주 후 근린생활시설 대표관리자와 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추후 협의하기로 합니다.<br>• 본 아파트에 위치한 산책로, 단지 면적 내 기타 공용시설물들의 유지 및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 | 공용설비 및 시스템 |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공조시스템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br>•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정압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 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 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br>• 지하주차장, 필로티 및 근린생활시설에는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br>•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보안등) 및 경관조명에 의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br>• 지하 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 계단, Top Light, 제연휀룸, D.A)과 인접한 저층 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br>•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br>• 기계실, 휀룸 및 이와 유사한 기계 설비 장치가 설치되는 실에 인접한 곳에서는 장비로 인한 소음,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br>• 홈네트워크를 통한 화상통화는 불가합니다. |

| | | |
|---|---|---|
| | 커뮤니티 콘텐츠 | • 주민공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 집기류는 제공되지 않으며, 주민공동시설의 운영 방법은 입주 후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운영될 예정입니다. 단,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위탁관리업체에서 유료로 위탁 운영할 예정이며,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된 이후 위탁 운영등 주민공동시설 운영에 관련한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로 이관하여 운영됩니다. |
| | 주차장 |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됩니다.<br>• 근린생활시설용의 배관, 케이블 및 기타설비 등이 지하 주차장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br>• 주차장은 아파트 지하 545대, 지상 156대 / 근린생활시설 지하 21대, 총 722대(경차 및 장애인 주차, 환경친화적자동차 주차 구역 포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br>• 주차장의 주차면 계획과 일반형, 확장형, 장애인, 경형 주차 구획의 위치 및 비율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구조 형식 상 지하주차장의 주거 동 직하부와 기계실, 휀룸, 및 이와 유사한 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에 인접한 주차 구획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 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br>•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 소화전의 배치 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 구획은 차량 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br>• 단지 특성상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 ~ 지하 2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구획별로 지하주차장 층수 및 주거 동 연결 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br>•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총 65개 (급속 15개, 이동식 충전기 50개)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고, 다채널충전시설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지하 주차장의 일부 구간은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의 간섭으로 통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br>• 지하 1층 주차장 진입 및 주행 유효 높이는 2.3m로 화물차,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합니다.<br>• 지하 1층 주차장은 전동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합니다. ( 지하2층 주차장은 일부동만 직접 출입이 가능합니다.<br>•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주차출입구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3개소입니다.<br>•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나, 아파트 주출입구를 같이 사용합니다.<br>•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5조에 의거 지하주차장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이 설치되어 있으며 급수전의 이용에 관해서는 입주자대표협의회 및 관리사무소의 운영규정에 따릅니다.<br>• 주차장 등에 설치되는 트렌치에는 표면장력으로 일부 부위에서 물이 고일 수 있으며, 배수에 지장이 없고 물고임으로 인하여 물이 넘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라면 하자로 볼 수 없으며 사용검사 이후 트렌치에 고이는 협잡물 및 이물질 등의 청소 및 관리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있습니다.<br>• 주차장 바닥 마감은 에폭시계열로 우천시 차량 진입, 회전에 따른 소음, 미끌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입주자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 등은 사업주체, 시공사 등에 책임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근린 생활시설 |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나,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지상 부위의 차로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일체의 점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br>•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 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 될 수 있습니다.<br>• 근린생활시설의 분양 시점에 따라 MD(상품화)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 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br>•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근린생활시설 주차장내에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수거에 따른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br>• 근린생활시설용 저수조, 실외기, 연도 및 각종 장비류로 인하여 인근 동에 일조권·조망권·소음 및 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근린생활시설은 대지 및 전면 도로의 경사도에 따라 호실별 출입문, 바닥면의 높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단차부의 위치 및 바닥면의 높이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은 각 근린생활시설용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의 조업을 위한 차량 등이 단지 주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br>• 근린생활시설 주차 구획은 아파트와 분리되어 있으나, 아파트 주출입구를 같이 사용합니다.<br>• 근린생활시설은 입주자모집공고와 별개로 분양신고를 통해 수분양자에게 분양되며, 수분양자는 근린생활시설의 유지관리 의무책임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의 시설개선, 유지보수 등의 관리업무는 수분양자에게만 해당되고, 사용검사 이후에도 본 단지 또는 주무관청의 시설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단위세대 | 평면 |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br>•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본 아파트 세대의 천장 높이는 2,300mm로 시공됩니다.<br>• 입주 시 세대 내 침실별 가구(붙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br>•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br>•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현관, 현관 창고, 비확장 발코니, 실외기실, 욕실, 대피공간, 보일러실 등에는 바닥 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br>• 세대 내부 벽체는 마감 품질 확보를 위하여 재료(콘크리트, 조적, 경량벽체), 길이 및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세대 간 벽체에는 공사를 위한 작업 통로가 설치될 수 있으며, 작업 완료 후 조적 또는 건식 벽체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br>• 최상층 및 옥외공간 타입 하부 세대의 천장에는 상부 배관을 점검하기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br>• 최상층 및 옥외공간 타입 하부 세대에서는 상부 세대 옥외공간의 배수관 설치로 인해 실내 공간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br>•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은 수동으로 적용되며 일부 기기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br>• 욕실 벽체 마감은 유지관리 및 품질개선을 위해 건식으로 시공될 수도 있습니다<br>• 최상층 다락세대는 각 타입별로 다락계단 설치 위치와 구조가 상이하므로 위치 및 구조, 계단 공간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br>• 현관방화문은 도어클로저가 설치되며 이외에 별도의 시설물(말발굽 등)이 설치되지 않습니다.<br>• 1층 및 엘리베이터 전면에 현관이 위치한 세대는 소음등 일부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발코니 | • 발코니는 계획 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홈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br>•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의 위치,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선홈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미관상 저해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br>• 전,후면 발코니 창호의 형태, 재질, 크기 및 콘크리트 난간높이는 동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br>•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설치유무, 형태 및 사양은 동별, 층별로 차이가 있으며, 기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 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 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측벽 및 천장에 최소 결로 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 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 | | |
|---|---|---|
| | | • 세탁기와 보일러가 설치되는 공간 및 발코니에 수전과 실외기실에 선홈통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br>• 환기 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 에어컨 선택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수 있고,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화재 등 유사 시에는 별도의 대피공간으로 대피하여야 하며, 피난안전을 위해 대피공간에 별도의 물건을 적치할 수 없습니다.<br>• 세탁기와 건조기의 수직  설치 시(일체형 포함) 창문 개폐 불편, 세탁실 선반과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br>• 현장여건에 따라서는 품질개선 및 공사마감을 위하여 물끊기 홈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br>• 발코니에 설치되는 우수관 및 배수관으로 인하여 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물질 등으로 인해 막힘, 역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의 책임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br>• 기본형(비확장)세대의 경우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br>• 기본형(비확장)세대의 경우 발코니에는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음<br>• 기본형(비확장)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br>• 기본형(비확장)세대의 경우 주방 발코니상부는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br>• 발코니 비확장 시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시공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br>• 개별적인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해 난방장비 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을" 이 입주 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 부담하여야 함<br>•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하거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br>• 사업주체가 사용검사 후 입주자가 발코니 개별확장을 하거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개별 시공한 부위의 하자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원인 규명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br>• 입주자가 발코니 샤시를 개별 시공 설치 및 사용상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 되는 모든 사항(결로 등)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br>• 단위세대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 확장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일부 발코니 폭(전후간격)이 협소하므로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에 문제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br>• 입주자가 별도로 발코니 확장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 공사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각종 민·형·행정상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br>• 기본형(비확장) 세대에서 전체 발코니가 연결된 경우 각실이 아닌 거실 혹은 주방 등 특정 실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br>• 발코니 확장 부위는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 추위를 느낄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창호 프레임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기적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br>•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 재료의 특성과 규격이 다를 수 있음<br>• 발코니확장 선택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 될 수 있고,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바닥재·벽지의 변색, 오염, 곰팡이 등이 생길 수 있으며, 직접 외벽에 면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을 주지하기 바람<br>•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샤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 | 창호 | • 단위세대 타입 및 실에 따라 적용되는 창호 및 하드웨어(손잡이 등)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br>•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
|---|---|---|
| | | • 발코니 확장 시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 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 두께 및 색상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br>• 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 및 문짝의 폭, 높이,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보일러 설치로 다용도실 창호 일부가 고정되어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정창에는 손잡이가 설치되지 않습니다.<br>•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겨울철 밀폐된 생활 환경 속에서 음식 조리, 가습기 사용, 실내 화분, 빨래 등으로 인해 실내 상대 습도가 40~50% 이상이 될 경우에는 창호 유리면 및 창틀 주변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연환기 또는 세대 환기 시스템을 작동하여 결로 현상을 예방해주시기 바랍니다.<br>• 철제문의 경우,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사양(디자인, 문짝 두께, 문틀, 경첩의 형태, 하드웨어, 마감 등)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br>• 단위세대 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및 안정성에 따라 본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창호 계획에 있어 주거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위치 및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 옥외공간 | • 옥외공간에 배수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물막힘 및 동파로 인한 해당 세대 우수 유입 및 하부 세대 누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br>• 단위세대의 옥외공간은 설계 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용공간으로 다른 세대의 진입은 불가능하나 해당 세대의 전용공간이 아니므로 공용설비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한 진입 요구 시 개방하여야하며, 등기를 포함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br>• 옥외공간 바닥은 콘크리트 마감이며, 바닥 레벨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최상층 옥외공간에는 통기 배관 및 연도가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조망권·소음 및 진동,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br>• 옥외용 수전이 설치된 경우에는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해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며, 파손 시 공용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하자처리는 입주자가 이행하여야 합니다.<br>• 옥외공간에는 우수 또는 배수 드레인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고 수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옥외공간 진입을 위해 단위세대 발코니 외부 창호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고, 옥외공간 외곽에 난간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재질 및 색상,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사업 주체 및 시공사가 준공 시 입주자에게 인도하는 옥외공간 건축 기본 마감(방수, 단열, 무근콘크리트) 외에 입주자의 추가적인 시공(데크, 타일 마감 등)은 옥외공간 상부의 허용하중, 방수, 배수에 대한 기본 설계 조건에 대해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후 반드시 해당 관청에 행위허가 여부를 입주자의 책임으로 확인 하신 후 시공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공사 시 인접 세대 및 아래 층 세대에 동의를 구하고 시공하여야 합니다.<br>• 단위세대의 옥외공간의 물건적치 등으로 인한 자재 파손, 박락, 탈락, 떨어짐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입주자가 제반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하며, 특히 옥외 물놀이 시설 등의 설치로 인해 생기는 구조상 하자는 관리주체 및 시공사, 시행사의 책임이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입주자가 제반책임을 지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br>•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옥외공간은 건축법 상 상부 지붕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br>• 옥외공간에는 추후 유지보수를 위한 고소 작업 시 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고리 혹은 안전고리 체결용 매입철물 등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 가구 및 마감재 | • 붙박이 가구(신발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조명, 스위치 등)는 본 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 자재는 본 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택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 계획(디자인, 크기, 도어갯수 등),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 가족)은 본공사 시 내습형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인접 세대간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일부 세대 아트월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설비 배관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냉장고장 형태는 옵션 사항이며, 이에 따라 냉장고장이 상이하게 설치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선택 시 냉장고(입주자 직접 설치 가전)가 제품 사양에 따라 일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장, 샤워부스, 시스템 선반의 형태,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에 건조기 사용 시 온도 습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어, 결로 및 기타 하자 방지를 위하여 환기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 표면재(벽지, 시트, LPM 등)는 제품 생산 시 미세한 색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석재류(인조석재 포함)는 자재 특성 상 색상, 무늬, 패턴 등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 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적용된 제품과 동급 이상의 자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타일은 시공 시 인접 타일과 줄눈 두께 상이 혹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형 타일의 재료적 특성 상 각 장 별 색상 및 패턴의 차이(멀티 패턴 타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포셀린 및 도기질 타일은 대형 타일 및 재료적 특성상 인접 타일과 일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색상, 줄눈 두께, 무늬 및 패턴(멀티 패턴 타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양변기 인근 매립형 휴지걸이를 설치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는 노출형 휴지걸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상부의 커튼박스는 천장 속 단열 마감을 위하여 커튼박스의 폭, 깊이, 길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주택형별 사양(개폐 타입, 사이즈, 색상 등)이 다르며, 본 공사 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설치 유무에 따라 신발장의 형태나 규격, 설치위치, 도어 개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PVC 단열도어는 본 시공 시 동등 성능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또는 확장형 평면에 제공되는 품목(주방 가구, 냉장고장, 붙박이장, 드레스룸 선반 등)이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확장 시 제공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PLUS 옵션 선택에 따라 타입별 평면 및 마감재 적용 부위가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루의 특성상 색상, 무늬, 패턴 차이와 옹이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하자가 아닙니다.
- PLUS 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 계획, 일부 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 설치위치 및 연계자재(배수구 등)의 위치 또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 | |
|---|---|---|
| | 전기 및 기계설비 |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br>• 환기 시스템 및 욕실 배기, 주방 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br>•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 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욕실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br>• 환기 디퓨져,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 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 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br>• 에어컨은 실외기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br>• 시스템 에어컨 미선택 시 냉매배관이 설치됩니다.(거실 및 안방에 설치)<br>•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본 냉매 매립배관은 천장 속 노출 냉매배관으로 변경 시공되며, 시스템 에어컨 설치 공사비는 변경 공사를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br>•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추가 설치되는 에어컨은 별도의 실외기 고정가대 및 에어가이드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 합니다.<br>• 에어컨 가동 시 실외기실 루버는 반드시 열려있어야 되며, 루버 부근에 방충망 또는 물건 적치 시 공기 순환 장애로 인한 효율 저하 및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br>• 자동제어시스템 및 온도, 환기조절기 등은 내부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br>•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설계 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1층 세대 하부에 각동 제연을 위한 급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br>• 외벽 또는 세대 실외기실 등에 가스 입상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내부 일부 층에 루프 배관 등으로 미관 저해 및 공간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br>• 욕실, 드레스룸 및 팬트리의 난방 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 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 제어 될 수 있습니다.<br>• 침실, 알파룸, 베타룸이 옵션 선택에 따라 대형 드레스룸 및 팬트리로 변경될 경우 온도조절기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난방 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 제어 될 수 있습니다.<br>• IOT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 OS 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패스카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br>• 세대 내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전자식스위치,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의 위치 및 수량은 단위세대 평형, 타입, 옵션 등에 따라 변경됩니다.<br>• 발코니 미확장 세대는 가스쿡탑이 기본제공 되며, 발코니 확장 세대는 3구 하이브리드 쿡탑(인덕션 2구, 가스1구)으로 제공됩니다.<br>• 3구 인덕션 유상옵션 선택과 무관하게 주방 가스배관 및 차단기는 기존위치와 동일하게 설치합니다.<br>• 가스쿡탑 적용 시 세대 가스 계량기가 설치된 장소에서 가스쿡탑까지 연결되며, 이 경우 가스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니 선택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r>• 주방에 설치되는 자동식 소화기는 사용 열원에 맞는 종류로 설치됩니다.<br>• 주방 옵션 선택 시 후드 타입에 따라 인근 천장에 자동식 소화기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br>• 싱크대 하부에 난방분배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간 제약과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br>• 견본주택 내 설치된 비데 리모컨(유상옵션) 설치 위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설치 위치는 향후 변경 될 수 있으며, 입주 시에는 리모컨을 미부착 후 기본 제공하여 드리오니 입주자의 사용 편의성 및 선호 위치에 부착하여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br>• 건조기와 세탁기를 2단 설치 하는 경우 가스보일러 점검 또는 교체 시 건조기와 세탁기 분리와 재설치를 위한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r>• 본 아파트는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며, 세대별 보일러를 설치한 개별난방 방식이 적용됩니다<br>• 세대 보일러는 적정한 용량을 선정하였으나, 온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온수 사용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복합형 환풍기(유상옵션)는 욕실 천장 공간의 기구물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입주 후 세대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전열기기등으로 인해 순간 전압강하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조명기구 및 타 전자제품의 작동 이상문제를 일으킬수 있으나 특정 전열기기의 문제임에 따라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br>•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 후 에어컨 설치로 추가 설치하는 경우 에어컨 실외기는 외부로 돌출하여 설치할 수 없습니다. |
| 견본주택 | 견본주택 |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 용량,속도,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br>•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식재, 입면, 색채, 경관연출 등) 및 각종 인쇄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공사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과정이나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차, 보도 포장, 식재, 시설물의 마감재질, 디자인, 선형, 위치, 규모, 색채, 거리, 폭 등을 포함하여 주변 환경과 부지 내 계획과에 따른 고저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쿨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 예정입니다.<br>•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 중단, 제조 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견본주택의 온도조절기, 환기디퓨져, 스프링클러 헤드, 시스템 에어컨은 상황에 따라 타입,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 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견본주택에 설치된 전자식스위치는 유상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기본형 스위치가 설치됩니다.<br>•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는 유상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한양건설 표준화 조명이 설치됩니다.<br>•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br>•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br>• 견본주택에 미건립된 주택형의 경우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사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시 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br>• 견본주택에 미건립된 주택형의 경우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사양, 개수, 설치 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br>• 견본주택 미건립 타입 59B㎡, 84A㎡, 84B㎡ 타입은 건립되어 있는 59A㎡, 84C㎡ 타입의 마감 자재에 준하여 시공됩니다.<br>• 견본주택에 설치된 일부 마감 자재는 유상옵션 품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기본형 마감자재는 견본주택 POP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br>• 견본주택에 설치된 위생기구는 유상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기본형 위생기구가 설치됩니다.<br>• 견본주택에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 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 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1 기타 계약자 안내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전 까지 입주예정자 사전 방문을 2일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입주예정월 : 2027년 10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입주지정 개시일 1개월 전 통보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 예정자들의 원활한 입주를 위하여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60일 이상의 입주지정기간을 설정할 예정이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 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합니다.

| 구분 | 등급 |
|---|---|
| **내진능력** | **VII-0.204g** |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 (MMI등급, Ⅰ~V)으로 표기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어린이집, 돌봄센터,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룸, 독서실, 작은도서관, 스카이라운지, 게스트룸, 주민운동시설 등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3항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 구 분 |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부위, 설치개수 등 |
|---|---|---|---|
| 건축부문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1호) | 단열조치 준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
|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
| | 방습층 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

| | | | |
|---|---|---|---|
| 기계부문설계기준<br>(제7조제2항제2호)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br>(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
|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
| |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 적용 | 가정용보일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
| |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적용 |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
| |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 적용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
| |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적용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 |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적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
| 전기부문설계기준<br>(제7조제2항제3호) |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
|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
| | 조명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적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금액

|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원) | 보증기간 |
|---|---|---|
| **제 07912024-101-0000600 호** | **68,854,100,000**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 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체결과 동시에 공급계약자에 대한 공급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공급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66-9009)

## 자금관리 대리사무

- 우리자산신탁(주)(이하 "자금관리 대리사무사"라 한다)는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수분양자의 중도해지에 의한 환불금 등) "매도인"로서의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 총액을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위해 분양수입금을 "자급관리 대리사무사"에게 납부하기로 합니다.
- "자금관리 대리사무사"는 부족한 사업비의 조달에 관여하지 아니합니다.
- "수분양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사"가 본 사업의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 반환 의무는 "매도인"이 부담함을 확인하며, 향후 분양대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의 자금관리계좌 잔액이 분양대금 반환액보다 적을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한 자금조달 의무는 "매도인"의 책임으로 이행함을 확인합니다.
- 분양대금반환과 관련하여 매수인인 "수분양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분양대금 반환 등을 직접 청구할수 없고, "매도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구 분 | 건축감리 | 전기감리 | 소방감리 | 정보통신감리 |
|---|---|---|---|---|
| 상 호 | ㈜미드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 | (유)광진이엔지 | ㈜정엔지니어링 | 세영엔지니어링(주) |
| 금 액 | 1,969,041,206 | 519,843,453 | 91,023,950 | 159,500,000 |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구분 | 시행사 | 시공사 |
|---|---|---|
| 상호 | 용당 더숲 지역주택조합 | ㈜한양건설 |
| 법인등록번호<br>(사업자등록번호) | 307-52-00967 | 200111-0013238 |
| 주소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순천로 60-9, 2층 205호(더푸르너스) |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60(감북동)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순천 견본주택 : 전라남도 순천시 가곡동 359-3
■ 사 업 지 : 전라남도 순천시 용당동 288-1 일원
■ 홈페이지 : http://hanyangleeps-sc.kr/
■ 분양문의 : 061-751-0001